

치아안심보험 ◇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치아안심보험 ◇

3. 보험의 목적

- 1) 피보험자의 신체
-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보험료납입주기
1년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3년	일시납, 36회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1) 자동갱신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특별약관II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2)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
-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4) 치과의료비 제외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회사는 치과의료비 제외 특별약관의 경우 치과의료비를 보장하는 당사 상품의 기존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함.

- 5) 자동갱신 특별약관 및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별약관 판매 제한에 관한 사항
- ① 자동갱신 특약 : 2012.4.1일 이전 자동갱신특약 첨부 계약의 갱신계약에 한해 적용
 - ②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약 : 2012.4.1.부터 최초로 가입하는 계약에 적용
- 6) 피보험자 가입연령 : 1세 이상 60세 이하 (갱신계약 : 65세까지)
 (치과보철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20세 이상 55세 이하(갱신계약 : 60세까지))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7) 판매상품의 명칭에 관한 사항
 판매상품의 명칭은 “치아안심보험< >”으로 함.
 다만, < >부분은 자동갱신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한하여 <갱신형>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예시>

- ① 자동갱신특약 미첨부 계약 : 치아안심보험
- ② 자동갱신특약 첨부 계약 : 치아안심보험<갱신형>

8) 판매플랜에 관한 사항

- ① 통신판매(TM, 홈쇼핑 등)시 아래 3항과 같이 플랜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하는 플랜명은 다를 수 있음.
- ② 플랜유형 C-1, C-2, C-3은 치과의료비를 보장하는 당사 기존 계약자에 한해 판매함
- ③ 플랜유형

A-1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A-2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상해 후유장해

A-3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A-4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B-1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B-2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B-3 플랜	
기본계약	· 치과의료비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C-1 플랜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C-2 플랜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C-3 플랜	
선택특약	· 치과보철치료비 · 상해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 질병사망 및 80%이상고도후유장해

9)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2013년 4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함.

(2013년 4월 1일 이전 자동갱신특약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별약관 첨부 계약의 갱신에 한하여 판매함)

10)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2) 기타

-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SM